우리나라 노동비용의 국제적 수준

강 승 복*

Ⅰ. 들어가며

최근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우리나라 노동비용의 증가율 및 고용주의 사회보장 비중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선진국 및 경쟁국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고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율의 임금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1], 1997년 이후 사회보험의 확대가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이루어져 이에 따른 기업들의 노동비용 증가로 인해 투자감소 및 비정규직 고용확대 등 많은 부작용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2]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사실은 간과한 채 시간당 임금증가율만 세계 최고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며, 절대적 시간당 임금증가율 또한 영국, 미국 등의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3].

이 글은 노동비용의 정확한 국제비교를 위하여 노동비용(Labor Cost) 정의와 한계점을 파악해 보고, 우리나라 노동비용 증가율 및 구성항목의 실태 및 적정성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4] 이를 위해 노동비용의 국제비교시 흔히 이용되고 있는 미국노동통계국(BLS)의 노동비용 통계를 우리나라 노동부 및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통한 노동비용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kangsb@kli.re.kr).

1) 한국경영자총협회(2007),『임금수준 및 생산성 국제비교』.

2) 한국경영자총협회(2006),『최근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증가 현황과 정책과제』.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7),『노동생산성 및 임금인상률 OECD국가 국제비교』.

4) 생산성에 대비한 노동비용인 단위노동비용에 대한 분석은 추후에 시행하겠다.

Ⅱ. 노동비용의 정의와 측정

1. 임금관련 통계의 정의

임금(wage), 봉급(salary), 임금소득(earning), 보수(compensation), 소득(income), 노동비용(labor cost) 등의 용어들에 있어서 기본 개념은 유사하지만 포괄범위가 조금씩 다른 용어들로서 흔히 구별되지 않고 쓰이고 있으나 국제비교 등의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정확한 차이점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73년에 임금관련 통계들의 정의를 발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임금관련 통계의 정의

관계	개념과 요소	비고
	1. 임금률(wage rates) : 기본급, 생활비보조금, 기타 정기적 보조금 (1) 초과급여 (2) 정기적 상여금	BLS는 “basic time and piece rates”라고 부름.
2=1+(1)+(2)	2. 직접급여 및 봉급(direct wages and salaries) (3) 노동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보수 (4) 비정기적 상여금 (5) 기타 급료	BLS는 ”pay for time worked”라 부름.
3=2+(3)+(4)+(5)	3. 임금소득(earnings) (6) 공공 및 민간 사회보장금에 대한 고용주 부담금 (7)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장금이지만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용 (a) 자녀, 배우자, 가족의 교육비 보조금 (b)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급여 (c) 퇴직금 (8) 개인소득세 (9)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금 (10) 분가한 근로자 자녀에 대한 보조금	BLS는 “direct pay”라 부름.
4=3−(8)−(9)+(10)	4. 순임금소득(net earnings)	
5=3+(6)+(7)	5. 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 (11) 자영업자 소득 (12) 이자소득 (13) 사회적 이전지출 수혜금	
6=5+(11)+(12)+(13)	6. 가구 총소득(household total income) : 국민계정 개념 (14) 이전지출 비용(소득세 등)	

관계	개념과 요소	비고
7=6-(14)	7. 가구 가처분소득(household disposable income) : 국민계정 개념 (15) 임대료 (16) 동일가구 내에서 생산, 소비된 가치	
8=7+(15)+(16)	8. 가구 총소득(household total income) : 가계조사 개념 (17) 자영자 관련 소득 (18) 현재 또는 과거에 발생한 이전소득 (19)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20) 조세, 국가 사회보험기여금 (21) 가구가 지급받은 변제금 (22) 비영리단체에 공여한 금액	
9=8-(20)+(21)-(22)	9. 가구 순소득(household net income) : 가계조사 개념	
10=5+(17)+(18)+(19)	10. 고용관련 소득 (23) 교육훈련비 (24) 복리비 (25) 비분류된 노동비용(이사비, 의복비, 모집비 등) (26)노동비용과 관련된 세금	
11=5+(23)+(24)+(25)+(26)	11. 노동비용(labor cost)	

자료 : ILO(1973), *Manual on Wages Statistics.*
OECD(2002), *Main Economic Iindicators: Comparative Methodological Analysis: Wage Related Statistics*에서 재인용.

이상의 개념들을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임금관련 변수들의 상호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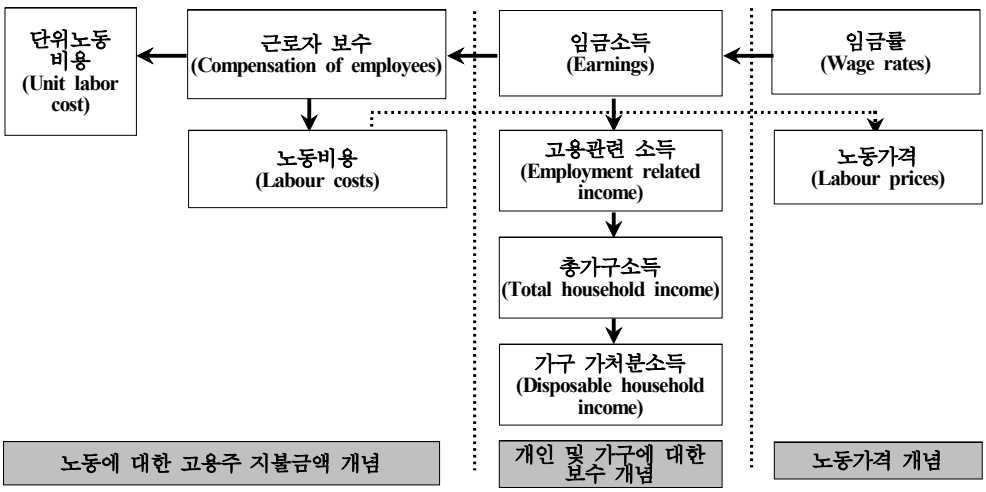

자료 : OECD(2002), *Main Economic Indicators: Comparative Methodological Analysis: Wage Related Statistics.*

2. 노동비용의 정의

앞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비용(labor cost)은 고용주가 노동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비용을 말한다. 노동비용의 주요 요소는 근로자에게 직접 주어지는 임금, 임금 이외의 보수,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생기는 부가적인 비용, 예컨대 교육훈련비, 복리비, 조세, 모집비 등이 포함된다.

ILO에서 정의한 노동비용의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노동비용에 대한 국제표준분류

노동비용에 대한 국제표준분류	
1. 직접급여	1. Direct wages and salaries
2. 노동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급료	2. Remuneration for time not worked
- 휴가수당	- Annual vacation, other paid leave
- 공휴일 수당	- Public and other holidays
- 기타 법률로 정해진 휴일에 대한 수당	- Other time off granted with pay
- 퇴직금	- Severance and termination pay
3. 상여금	3. Bonuses and gratuities
- 정기상여금	- Year-end and seasonal bonuses
- 성과금	- Profit-sharing bonuses
- 휴가에 대한 추가수당	- Supplementary vacation pay and other bonuses and gratuities
4. 음식료비, 유류비	4. Food, drink, fuel and other payments in kind
5. 주택보조금	5. Housing and rent allowances
6. 사회보장금, 연금	6. Social security, pensions, etc.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 Direct payments by employer to employees regarded as social security payments
- 공공 또는 민간의 사회보장금과 연금에 대한 고용주의 기여분	- Employers' contributions to social security schemes and pension schemes (statutory and non-obligatory)
7. 교육훈련비	7. Employer's cost for vocational training
8. 복리비	8. Employer's cost of welfare services
9. 기타 고용주의 비용	9. Employer's other labour cost
10. 노동비용에 부과된 조세	10. Taxes regarded as labour cost

자료 : ILO(1979), *An Integrated System of Wage Statistics - A manual on Methods.*

일반적으로 노동비용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에는 자료수집의 용이성 때문에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에 한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또한 노동비용에 대한 통계는 모든 국가들이 작성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국가들도 포괄범위 및 작성주기가 상이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국가별 노동비용 통계의 작성여부 및 주기는 <표 3>과 같다.

〈표 3〉 각국의 노동비용 통계작성 현황

	노동비용 통계작성 여부	
	분기	연간
캐나다	○	
멕시코		
미국	○	
호주	○	
일본		○
한국		○
뉴질랜드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체코		○
덴마크	○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헝가리		
아이슬랜드		○
아일랜드	○	
이탈리아	○	
룩셈부르크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폴란드		○
포르투갈	○	
슬로바키아		
스페인	○	
스웨덴	○	
스위스		
터키		○
영국	○	

주 :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포르투갈은 노동가격(Labor Price) 통계임.
자료 : OECD(2002), *Main Economic Indicators: Comparative Methodological Analysis: Wage Related Statistics.*

Ⅲ. 우리나라의 노동비용 수준

1. 우리나라 노동비용(시간당 보수 수준)의 증가율의 적정성

여기서는 우리나라 노동비용(시간 등 보수 수준)의 증가속도가 경제규모에 비해 적정한지의 여부와 미국노동통계국(BLS)에서 작성하는 국제통계 중 우리나라에 관한 통계의 신뢰성에 대해 알아보겠다.

BLS에서 작성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노동비용 통계는 1975년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와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일관성 있는 시계열자료로 인해 노동비용 국제비교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통계이다. BLS에서 작성하고 있는 노동비용 통계는 정확히 말해 시간당 보수비용(hourly compensation cost) 통계로서 ILO에서 정의한 노동비용(labor cost)보다는 범위가 조금 작다. 즉, 시간당 보수비용은 ① 직접급여 ② 간접급여(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과 조세)로 이루어지는데 노동비용 통계와 다른 점은 시간당 보수비용에는 모집비, 훈련비, 회사 내 복지시설 유지비 등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BLS의 시간당 보수비용 통계는 각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재계산한 가공통계인데, 아쉬운 점은 각국 통계작성시 이용한 정확한 출처자료와 가공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금을 비롯하여 노동비용을 국제비교할 때에는 단순히 그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해당국가별로 관습, 조세수준, 생활비, 사회보장 수준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금 및 노동비용의 증가율을 국민경제 증가율과 비교한다면 노동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BLS의 통계가 밝히고 있는 미달러화를 기준으로 한 최근 10년간 각국의 시간당 보수 증가율은 <표 4>와 같다. 이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 등 16개국의 최근 6년간 시간당 보수비용 증가율은 한국이 16개 비교국가 중 가장 높은 10.7%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대만, 일본 등이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용자단체에는 이러한 수치를 인용하여 한국의 임금(노동비용)이 경쟁국가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비용 증가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국민경제수준(생산성) 증가율과 조응하여 변화한 수치라면 정상적이며 합리적인 것이다.

<표 5>는 미달러화로 환산한 각국의 GDP 증가율을 나타낸 표이며, [그림 2]는 미달러화를 기준으로 하여 시간당 보수증가율을 가로축에, GDP 증가율을 세로축에 놓고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비교된 16개국의 수치들은 대체로 원점에서 출발한 45도 선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시간당 보수증가율이 GDP 증가율만큼 변화하고 있

〈표 4〉 각국의 시간당 보수비용 증가율(명목 미달러화 기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0~05	순위
한국	12.3	-9.7	13.8	10.1	18.9	18.8	10.7	1
노르웨이	-6.4	3.9	19.4	17.4	8.5	8.3	8.5	2
호주	-5.1	-5.5	9.4	26.2	15.9	10.0	8.5	3
네덜란드	-9.0	1.4	11.7	24.6	13.7	3.4	7.6	4
덴마크	-12.0	1.8	10.2	28.0	13.5	1.9	7.2	5
영국	-1.1	-1.1	10.5	13.7	17.4	3.9	7.2	6
스페인	-12.0	0.9	8.6	25.8	13.6	4.2	6.9	7
캐나다	3.3	-1.2	2.2	15.5	8.9	11.6	6.7	8
벨기에	-11.8	2.1	10.2	23.2	12.3	4.3	6.7	9
프랑스	-9.0	-0.3	11.1	23.2	12.4	2.8	6.7	10
스웨덴	-5.3	-6.8	12.2	26.3	12.9	0.6	6.7	11
이탈리아	-11.2	0.6	8.3	23.0	13.4	3.1	6.2	12
독일	-8.8	0.0	8.2	22.4	10.4	1.2	5.6	13
미국	9.2	2.3	7.3	7.0	2.0	4.6	5.4	14
대만	5.4	-1.7	-6.2	2.0	0.8	5.5	1.0	15
일본	4.9	-10.2	-2.3	5.6	7.7	-0.2	0.9	16

자료 : BLS(2007),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Hourly Compensation Costs for Production Workers in Manufacturing.*

〈표 5〉 각국의 GDP 증가율(명목 미달러화 기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0~05	순위
노르웨이	5.6	1.7	12.1	17.0	14.4	16.0	11.1	1
스페인	-6.0	4.7	12.8	28.5	18.1	8.1	11.0	2
호주	-3.3	-5.2	12.1	26.9	21.4	11.3	10.5	3
한국	15.0	-5.8	13.5	11.2	12.0	15.7	10.3	4
캐나다	9.6	-1.3	3.0	17.8	14.4	13.9	9.6	5
네덜란드	-6.3	4.0	9.3	22.9	12.9	2.9	7.6	6
덴마크	-7.9	0.2	8.3	23.0	14.5	5.6	7.3	7
영국	-1.5	-0.6	9.6	15.0	18.0	3.1	7.3	8
이탈리아	-8.5	1.7	9.1	23.7	14.5	2.2	7.1	9
프랑스	-8.7	0.8	8.8	23.6	14.5	3.2	7.0	10
벨기에	-8.6	-0.2	8.7	23.1	15.5	3.7	7.0	11
스웨덴	-4.6	-8.5	10.0	24.9	15.1	2.2	6.5	12
미국	5.9	3.2	3.4	4.8	7.0	6.4	5.1	13
독일	-11.3	-0.6	6.8	21.0	12.7	1.6	5.0	14
대만	7.5	-9.2	1.1	1.7	7.5	7.4	2.7	15
일본	6.9	-12.1	-4.5	8.4	8.4	-0.6	1.1	16

자료 : 통계청, http://kosis.nso.go.kr.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말해 시간당 보수증가율이 국민경제적으로 무리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비록 시간당 보수증가율이 가장 높지만 미달러화를 기준으로 하는 GDP 증가율도 비교국가 중 높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시간당 보수증가율은 국민경제 관점에서 볼 때 무리하게 높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림 2〕 임금관련 변수들의 상호관계(2005년, 각각 명목 미달러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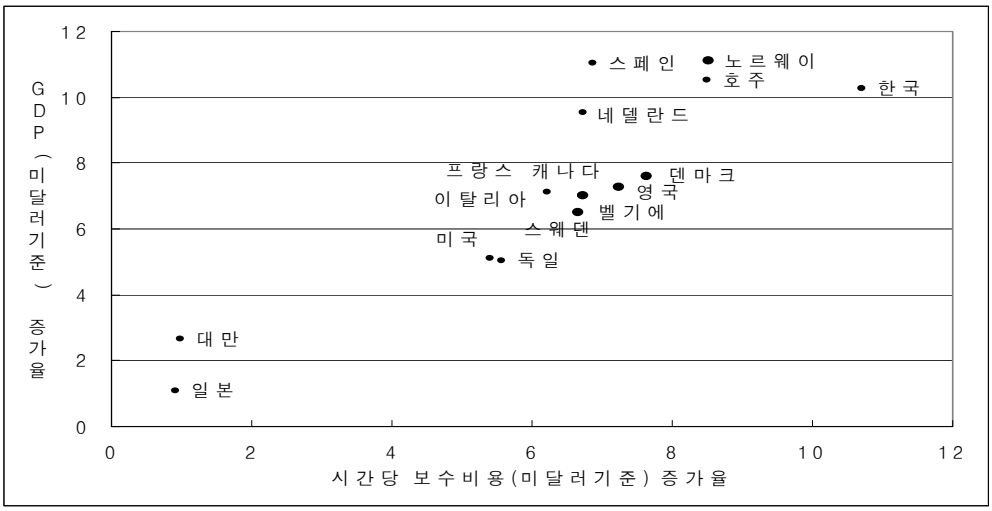

자료 : BLS(2007),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Hourly Compensaton Costs for Production Wirkers in Manufacturing* 및 통계청 KOSIS, kosis.nso.go.kr를 이용하여 재구성.

2. 시간당 보수 수준 중 사회보장지출금 및 노동관련 세금의 비율

다음으로 노동비용(시간당 보수 수준) 중 고용주의 각종 사회보험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지출규모 및 노동관련 세금의 비중을 알아보자.

BLS는 사회보장지출금 및 노동관련 세금을 법률적으로 강제하거나 고용주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사회보장지출금, 그리고 기타 세금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5] 사회보장지출금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퇴직연금 및 장애연금, 건강보험, 소득보장보험, 상해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포함되며, 기타 세금에는 고용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제세금이 포함된다.

BLS가 계산한 각국의 시간당 보수비용 중 고용주의 사회보장지출금 비중은 <표 6>과 같은데 한국의 사회보장지출금 비중은 16개 비교국가 중 6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 및 대만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BLS가 밝히고 있는 한국의 사회보장지출금 비중은 우리나라 노동부 통계를 비롯하여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을 통해 계산한 수치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 노동부에서는 매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를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동비용의 수준 및 구성항목의 비중을 수록하고 있는 대표적 통계이다.「기업체노동비

5) BLS(2007),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Hourly Compensaton Costs for Production Wirkers in Manufacturing.*

용조사」는 노동비용을 크게 현금급여, 현금급여외 비용으로 대별하고, 현금급여외 비용은 다시 퇴직금, 현물지급액, 법정복리비, 법정외복리비, 모집비, 교육훈련비, 기타 노동비용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표 6〉 각국의 시간당 보수비용 중 고용주의 사회보장지출금 비중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0~05	순위
이탈리아	31.4	31	30.9	30.9	30.9	30.9	31.0	1
프랑스	30.8	30.7	30.8	31.1	31.2	31.2	31.0	2
벨기에	31.5	30.0	30.0	30.0	30.0	30.0	30.3	3
스웨덴	28.1	28.0	27.9	28.3	28.3	28.1	28.1	4
스페인	24.9	25.0	25.1	25.1	25.0	25.2	25.1	5
한국	27.1	26.2	24.1	21.7	21.7	21.7	23.8	6
독일	23.5	23.2	23.2	22.9	22.8	26.6	23.7	7
미국	20.1	20.8	21.0	21.7	21.9	22.5	21.3	8
네덜란드	21.5	21.2	20.9	20.6	20.3	20.0	20.8	9
호주	18.9	19.5	19.2	19.4	20.3	20.3	19.6	10
노르웨이	15.7	16.8	17.9	19.0	20.0	20.0	18.2	11
영국	18.0	17.7	17.7	18.5	18.5	18.5	18.2	12
캐나다	15.6	16.5	17.8	18.7	19.4	19.4	17.9	13
일본	16.6	17.0	17.0	17.0	17.0	17.0	16.9	14
대만	14.4	14.5	13.0	12.0	12.1	12.1	13.0	15
덴마크	7.9	8.9	9.7	10.1	10.4	10.3	9.6	16

자료 : BLS(2007),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Hourly Compensaton Costs for Production Wirkers in Manufacturing.*

〈표 7〉 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를 이용한 노동비용 중 고용주의 사회보장지출금 비중

(단위 : 천 원, %)

	노동비용 총액 A	법정 복리비 B	퇴직금 비용 C	법정외 복리비 D	사회보장 지출금 비중1 B/A	사회보장 지출금 비중2 (B+C)/A	사회보장 지출금 비중3 (B+C+D)/A
2000	2,724	182	629	169	6.7	29.8	36.1
2001	2,610	209	385	174	8.0	22.8	29.5
2002	2,766	220	291	197	8.0	18.5	25.8
2003	3,145	243	379	227	7.7	19.8	27.1
2004	3,019	192	212	162	6.3	13.4	18.9
2005	3,182	208	224	178	6.5	13.6	19.3

자료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각년도를 이용하여 재계산.

〈표 8〉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을 이용한 피용자 보수 중 고용주의 사회부담금 비중

(단위 : 10억 원, %)

	피용자 보수 (10억원) A	고용주의 사회부담금[6] B(=C+D)	실제사회부담금 C	귀속사회부담금 D	사회부담금 비중1 B/A	사회부담금 비중2 C/A
2000	248,223	27,495	11,223	16,272	11.1	4.5
2001	270,561	30,484	14,485	15,989	11.3	5.4
2002	294,425	34,274	16,644	17,630	11.6	5.7
2003	319,934	36,267	18,862	17,405	11.3	5.9
2004	344,614	39,397	21,205	18,193	11.4	6.2
2005	365,038	43,132	24,248	18,885	11.8	6.6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이를 BLS 기준의 보수비용 개념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비용 총액에서 모집비, 교육훈련비, 기타 노동비용을 제외하면 되는데 시간당 통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BLS 통계와는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인 윤곽은 유사할 것이다. 이렇게 재구성된 노동비용 총액에서 고용주의 각종 사회보험부담금을 나타내는 법정복리비의 비중을 계산하면 2005년 현재 6.5%에 불과하다. 또한 법정복리비에 퇴직금을 더하여 광의의 사회보장지출금을 계산해 보아도 2005년 현재 13.6%에 불과하며 여기에 법정외복리비를 더하여 계산해 보아도 19.3%로 나타나 BLS자료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을 통해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용자 보수 중 고용주의 실제사회부담금의 비중은 2005년 현재 6.6%에 불과하고 여기에 귀속사회부담금까지 포함한 광의의 사회부담금 비중을 계산하더라도 2005년 현재 11.8%를 나타내고 있어 BLS 자료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BLS 자료가 한국의 노동비용 중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과대추정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BLS가 통계작성시 각국의 인용통계 및 통계가공 방법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BLS 방식대로 한국의 통계를 정확하게 재계산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편, OECD는 최근 들어 자체적으로 회원국들의 노동비용을 추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단계로서 BLS만큼 폭넓은 시계열과 구성항목 비중을

6)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부담금은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수혜자로 하여 사회보장기구나 민간기금, 사회보험기구 등에 납부하는 실제사회부담금과 고용주가 사회보험기구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기금 또는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고 사고 등 사유발생시 자체 재원으로 피고용자나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비기금형 사회수혜금, 즉 귀속사회부담금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한국은행(2005),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발표하고 있지는 못하다.

<표 9>는 OECD가 발표한 *Main Economic Indicators: Comparative Methodological Analysis: Wage Related Statistics* 보고서를 발췌한 것인데, 이 표는 각국의 노동비용 통계 중 별다른 가공이 없어도 즉시 비교가 가능한 통계들을 모아 재구성한 것이다. 여기에서 미국, 캐나다 등은 <표 3>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비용의 범위가 상이한 관계로 직접 비교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사회보장정책을 조세를 통한 일반예산에서 지출하는 국가들(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은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반대로 사회보장기금을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직접 거둬들이는 국가들(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은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밝히고 있다.[7)]

따라서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의 높고 낮음을 보고 그 나라의 임금시스템 및 복지정책의 선진성 및 후진성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2000년 현재 한국의 노동비용 중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지출금(법정복리비)의 비중은 6.6%로서 일본을 비롯한 비교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금의 비중이 높음으로 인해 법정복리비에 퇴직금을 포함한 광의의 사회보장지출금의 비중은 일본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복지정책이 부실하였던 과거에 사회보장 기능을 수행하였던 순기능이 있었으며, 현재 받아야 할 임금을 미래에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주의 부담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퇴직금을 포함한 고용주의 사회보장지출금이 높다는 통계를 인용하여 고용주의 기업경영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보장금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이다.

Ⅳ. 평 가

이상에서 노동비용의 정의와 각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노동비용 증가율의 적정성, 노동비용 중 고용주의 사회보장지출금 비중의 정도 등을 살펴보았다.

주로 BLS 통계에 의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주요국 노동비용의 정확한 모습을 파악하

7) OECD(2002), *Main Economic Indicators: Comparative Methodological Analysis: Wage Related Statistics,* pp.61.

〈표 9〉 OECD국가들의 노동비용 구성항목의 비중

일본(1998)	한국(2000)	체코(2000)	헝가리(2000)	이탈리아(2000)
합계 100.0	합계 100.0 (월 2,777천원 또는 2,456 US달러)	합계 100.0	합계 100.0	합계 100.0
임금 81.2	현금급여 62.7 -정액 및 초과급여 48.6 -특별급여 14.1	직접비용 70.8 -임금 63.9 -휴가수당 6.9	임금 67.1 -직접적 보수 50.8 -상여금 6.7 -휴가수당 6.3 -현물급여 3.4	봉급 70.8
임금외의 비용 18.8 -법정복리비 9.5 -교육훈련비 2.9 -퇴직금 5.5 -기타비용 0.8	현금급여외 비용 37.3 -퇴직금 22.6 -현물급여 0.1 -법정복리비 6.6 -법정외복리비 6.1 -모집비 0.1 -훈련비 1.4 -기타 0.4	간접비용 29.2 -사회보장금 1.7 -법정 사회보험 부담금 26.4 -개인별 지급수당 1.2 -조세 -0.1	고용주의 실제 사회적 기여금 27.5 -법정복리비 26.6 -노사합의 복리비 0.8 고용주에게 귀속된 사회적 기여금 2.8 기타 노동비용 2.6	봉급외 비용 29.2

노르웨이(2000)	폴란드(2000)	슬로바키아(2000)	스페인(2000)	스웨덴(2000)
합계 100.0	합계 100.0	합계 100.0	합계 100.0	합계 100.0
직접비용 82.6 -급여 80.5 -휴가수당 2.1	임금 76.2 -직접보수 67.9 -상여금 1.4 -휴가수당 6.9	임금 72.4 -직접보수 58.5 -상여금 2.4 -근로자 저축비용 0.1 -휴가수당 9.2 -현물급여 2.3	정기급여 67.3 상여금 7.1	임금 59.0 휴가수당 13.1
간접비용 17.4 -현물급여 2.7 -안전과 건강 0.3 -고용주의 사회적 기여금 2.4 -훈련비 1.3 -조세 10.6	고용주의 실제 사회적 기여금 4.0 -법정복리비 4.0	고용주의 실제 사회적 기여금 12.0 -법정복리비 11.8 -자발적 복리비 0.2	법정사회보장기여금 23.8 기타 노동비용 1.8	고용주의 사회보장 지출 25.3 기타 법정 고용세 2.7
	고용주에게 귀속된 사회적 기여금 2.2	고용주에게 귀속된 사회적 기여금 1.4		
	기타 노동비용 7.6	기타 노동비용		

자료 : OECD(2002), *Main Economic Indicators: Comparative Methodological Analysis: Wage Related Statistics.*

는데 일정정도 한계가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비교국가 중 노동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BLS 통계를 이용하더라도 국민경제 증가율과의 조응정도를 동시에 감안하면 우리나라 노동비용은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없이 적정하게 증가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노동비용 중 고용주의 사회보장 지출비중은 BLS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

게 나타나지만, 노동부 및 한국은행 통계, OECD 보고서를 통하여 보면 우리나라 고용주의 사회보장 지출규모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BLS의 통계가 고용주의 사회보장 지출항목에서 법정복리비와 더불어 퇴직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이와 같은 통계수치를 인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고용주의 사회지출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본질상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각종 사회보장기금들과는 무관한 기업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우리나라 노동비용 증가율은 국민경제 증가와 조응하여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이며, 노동비용 중 고용주의 사회보장지출금 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퇴직금을 포함한 광의의 사회보장 지출규모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아 고용주가 실제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정부가 복지정책을 축소시켜 사회보장부담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업내부에서 노사협의 등을 통한 자율적인 방법으로 임금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KLI